

기업공시 유의사항 (9)

이 자료는 상장회사의 공시관련 업무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에서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편집자 註>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 질의내용

- 상장법인 (주)가나의 공시담당자 A씨는 감사인으로 부터 사업보고서의 필수 첨부서류인 감사보고서 전송파일(*.DRT)을 받았다. A씨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전송파일 내용을 보거나 파일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답변내용

A씨는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 자료실에 안내되어 있는 전자문서제출요령을 참고하여 전송파일의 내용을 보거나 파일을 분리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전송파일 내용보기]

- DART편집기의 [제출-전송파일 관리-전송파일 내용 보기]메뉴를 선택
- 내용을 보고자 하는 전송파일을 선택
- '전송파일 보기' 창에서 구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업무 및 보고서명, 담당자, 공시대상회사, 제출의 무자, 문서목록 등

[전송파일 분리하기]

- DART편집기의 [제출-전송파일 관리-전송파일 분리하기]메뉴를 선택
- '전송파일 분리하기' 창에서 '분리할 파일'에는 분리하고자 하는 전송파일(*.DRT)을 선택하고 '저장할 폴더'에는 분리된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함.
- '분리'버튼을 클릭하면 전송파일을 구성하고 있는 문서파일(*.dsd)이 지정된 '저장할 폴더'에 복사됨.
- DART편집기를 실행하여 '저장할 폴더'에 있는 문서파일을 열어봄.

※ 한편 A씨는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접수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안내자료 - Q&A' 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접수 : 공시홈페이지 및 제출지원프로그램 등 사용방법 안내 : 전자공시 Help desk(1332 → 2번 → 3번)

(전자공시 Help desk 운영시간 : 평일 09:00~17:00)



• 질의내용

□ A씨는 (주)가나의 사업보고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부분에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은 그림파일을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답변내용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등기사항증명서 등 그림파일을 삽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전자문서제출요령을 참고하면 된다.

□ 전자문서에 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그림파일을 포함하여야 할 경우에는 문서에 해당 그림파일을 삽입하고 파일형식검사를 한 다음 전송하여야 함.

- 그림파일(*.JPG, *.GIF, *.BMP) 그 자체로는 전송이 불가능하며, DART편집기에서 그림파일을 삽입 후 저장하면 문서파일(*.dsd)에 포함됨.
- 그림파일은 파일 크기가 300KByte 이하만 삽입 가능하며, 그림파일 크기가 300KByte를 초과할 경우 DART편집기에서 자동으로 축소 변환됨.
- 첨부서류에 삽입해야할 그림파일이 많은 경우 '전자문서첨부서류 서면제출신청서'와 함께 심사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 공시서류에 삽입하는 그림파일에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

□ 스캐닝을 하여 그림파일을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권장함

스캐닝 해상도	100 DPI*1 정도			
	색상 수	2	16	256
파일형식	GIF	GIF	GIF or JPG	JPG*2
용량	300 KByte 이내			

*1 : 원본 인쇄물과 스캐닝 한 그림 또는 글자크기를 서로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정도의 크기

*2 : JPG의 경우 압축률은 25%가 이상적임.

• 질의내용

□ '09년 3월 31일 오후 A씨는 (주)가나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보고서의 필수 첨부서류인 감사보고서를 누락하여 사업보고서가 접수되지 않고 '접수유보'되어 있다. 이런 경우 A씨는 사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대로 접수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답변내용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보고서 본문 이외에도 감사보고서, 정관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감사보고서를 누락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유보되며, 3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이런 경우 A씨는 미제출 필수 첨부서류인 감사보고서 전송파일(*.DRT)만을 등록하여 전송파일을 생성하고, 접수홈페이지의 '첨부서류추가제출' 메뉴에

서 전송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전자문서 제출요령을 참고하면 된다.

□ 본문을 먼저 제출한 후에 제출하지 않은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기재출한 본문 및 첨부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첨부서류만 전송파일로 생성함.

- ① DART편집기에서 첨부서류를 작성
 - 정정제출이 아니므로 정오표는 작성하지 않음.
- ② 제출하지 않은 첨부서류만을 등록하여 전송파일 생성
- ③ DART편집기 또는 접수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첨부서류추가제출' 메뉴로 전송파일 제출
 - 본문이 유보 중이라면 '유보중인 문서에 첨부서류를 추가합니다'를 선택
 - 기접수된 문서에 첨부서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접수된 문서에 첨부서류를 추가합니다.'를 선택하고, '대상 접수번호 조회' 창에서 기접수된 문서의 접수번호를 선택
- ④ <제출현황조회-제출결과조회>에서 접수여부 확인

• **질의내용**

□ 상장법인 (주)가나는 최근 주주총회를 통하여 대표이사 변경되어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기업개황정보에 반영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 **답변내용**

상장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이사, 주소 등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법인은 기업개황이 변경되는 경우 거래소에 연락하여 변경내용을 등록하면 익일 전자공시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된다.

단, 회사의 업종을 구분함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와 상이한 업종코드 분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장법인의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접수홈페이지 (<http://filer.fss.or.kr>)에 로그인하여 '정보변경' 메뉴에서 직접 수정하여야 한다. 

발간안내



법학입문

법학박사 이군성 저

-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 ㈜KSS해운 상근감사
- 사단법인 기업법무협회 고문
- 재단법인 한국해사재단 감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위원

금번 발간된 '법학입문'은 법학을 전공할 학생이나 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 법의 원리에 대한 이해의 문을 열어준다.

특히, 법의 입무, 발전, 기초 제도 등을 살펴본 다음, 법과 도덕경제정치와의 관계, 법의 적용, 법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저자는 법 분야의 기초적인 내용들만을 소개하여 어느 누구나 쉽게 법학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